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나5344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2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7. 선고 2019가단4639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m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별지 “근저당권의 표시” 기재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접수 제71223호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1. 10. 체결된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별지 “근저당권의 표시” 기재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접수 제71223호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 1. 12. 접수 제2178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m 예비적 청구취지(당심에서 추가)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별지 “근저당권의 표시” 기재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접수 제71223호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 1. 12. 접수 제2178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는 2003. 10. 10. 소외 C 및 G 주식회사, F, D, E로부터 일람출급의 액면 77,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당일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위 어음발행인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2.자 2006차20368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따라 2010. 12. 24. 소외 K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K영농조합법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2014. 12. 10.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C은 D, J과 함께 2017. 3. 1. 원고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어음금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7. 11. 14.자 양도액 91,654,210원의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2017. 11. 15. D 앞으로 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1. 10.자 양도액 308,345,790원의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2018. 1. 12.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의 C 및 D,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가단202563 어음금

사건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8,891,500원 및 위 금원중 7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채무자인 C이 피고에게 2018. 1. 10.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1. 12.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C이 K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 일부 이전한 것은 민법 제361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C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C의 무자력뿐만 아니라 공동채무자들(확정된 지급명령 및 2017. 3. 1.자 합의서 관련자들)의 무자력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3) 피고는 C의 채권 일부와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기로 하고 2018. 1. 11. K영농조합법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주위적 청구를 판단한다.

가. 제척기간 경과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18. 1. 12.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원고가 C의 처분행위 및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나. C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여부

1)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K영농조합법인을 제3채무자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15.자 2014타채4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국내 주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삼아 2014. 8. 29.자 2014타채106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갑 제3호증 참조), 실제로는 추심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C에게 주민세 외에 지방세, 국세 등이 과세된 적이 없고, C은 2018년 15,600,000원, 2019년 6,040,000원의 일용직 근로소득을 얻었을 뿐이다(갑 제8, 9호증 참조).

반면 C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4억 원에 이르는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C이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담보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설령 C 외에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3) 결국 C이 2018. 1. 10. 피고에게 확정채권일부양도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의 채무자인 K영농조합법인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질 뿐이고, C으로부터 K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피담보채권 일부를 양도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2018. 1. 12.자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2018. 1. 10.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2018. 1. 12.자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현, 판사 김창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내지
	(아래참조)
	건물 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아래참조)

순번	건물 번호	건물 내역
1		22.68㎡
2		22.68㎡
3		22.68㎡
4		22.68㎡
5		22.68㎡
6		22.68㎡
7		22.68㎡
8		22.68㎡
9		22.68㎡
10		22.68㎡
11		22.68㎡
12		22.68㎡
13		22.68㎡
14		22.68㎡
15		22.68㎡

근저당권의 표시

1. 접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4.12.10. 제71223호

2. 등기원인 : 2014.11.28. 설정계약

3. 채권최고액 : 금400,000,000원

4. 채무자 : 영농조합법인 5. 근저당권자 : 6. 공동담보목록 :

7. 용구 순위 : 6. 순.

